

# 의료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

2014. 3. 13. 제정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원 비전임교원(이하 “비전임교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전임교원의 종류) 비전임교원은 「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」 제36조제4항에 의해 임용되는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,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임상의학교원, 연구전담교원, 진료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)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교원인사 규정」을 적용한다.

## 제2장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

제4조(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)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교원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구성) 교원인사위원회는 의료원장, 해당 부속병원장, 기획조정실장(기획실장), 사무부(국)장 및 의료원장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제6조(권한)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전임교원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
2.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동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하여 의료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관장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소집 등)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9조(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) ① 부속병원장은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속병원 교원인사위원회는 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, 교육연구부장, 사무부장 및 부속병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, 부속병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### 제3장 임용

제10조(임용절차) 비전임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발령하고,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임용계약) ①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계약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은 「교원인사 규정」 제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. 다만, 직급이 교수인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용한다.
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재계약) ① 비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승진 사정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은 재계약되지 아니하면,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용계약에서 정하는 직급을 유지하며, 직급별 최저 자격기준 및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재계약 시 승진 여부를 정한다.

제13조(임상의학교원의 자격) ① 임상의학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,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, 임상연구 및 임상교육을 주로 담당하며,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.

1. 임상조교수 : 전문의 자격 취득
  2. 임상부교수 : 전문의로서 만 6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조교수 임용 후 4년 경과
  3. 임상교수 : 전문의로서 만 11년 이상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임상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
- ② 대외적으로는 '임상의학' 또는 '임상'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4조(연구전담교원의 자격) ① 연구전담교원은 의료원에서 육성하는 연구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및 연구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임상진료분야 등 의약분야의 임상연구 및 연구교육을 주로 담당하며,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 기준으로 한다.

1. 연구조교수 : 박사학위 취득
  2. 연구부교수 :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
  3. 연구교수 : 박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또는 의료원 연구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
- ② 대외적으로는 '연구전담' 또는 '연구'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5조(진료전담교원의 자격) ① 진료전담교원은 임상과의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

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임상진료와 기타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, 일반진료교원, 진료명예교원, 수탁기관 진료교원으로 구분된다.

② 일반진료교원은 다음 각 호를 직급별 최저기준으로 한다.

1. 진료조교수 : 전문의 자격 취득
  2. 진료부교수 : 전문의로서 만 6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조교수 임용 후 6년 경과
  3. 진료교수: 전문의로서 만 11년 이상의 임상경력 또는 의료원 진료부교수 임용 후 5년 경과
- ③ 의료원 및 타 의료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퇴직 예정인 교원으로 진료 실적이 우수한 자를 진료명예교원으로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.
- ④ 의료원에서 수탁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장의 요청으로 수탁운영 의료기관에 진료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, 수탁기관 진료교원의 자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.

⑤ 대외적으로는 '진료전담' 또는 '진료'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6조(처우) ① 의료원 비전임교원의 급여는 임용직급과 동일한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며,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
② 임상의학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.

③ 연구전담교원 및 진료전담교원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복무, 신분보장, 징계

제17조(복무)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비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원 보직을 제외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, 대학(원)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.

④ 비전임교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8조(신분보장과 징계)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, 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 진료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「교원인사 규정」의 면직, 휴직, 직위해제,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2014. 3. 13. 제정)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